

2021학년도 제2차 급식평가위원회 결과 공지

1.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의 질 개선 및 식비 환급 기준을 강화하고자 2021년 11월 1일 총학생회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급식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급식평가 위원회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식비 환급 기준

<2021학년도 금강대학교 학생 식비 환급 기준>

제1항(식비 환급 기준) 식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 때에 한하여 환불한다.

1. 퇴사(휴학, 퇴학, 자퇴 및 강제퇴사)하는 경우 - 퇴사생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퇴사 일을 제외한 잔여일수만큼 전액을 환불한다.
2. 병역법 등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훈련 - 일할 계산하여, 해당일수만큼 환불한다.
3. 중도취업 및 그 외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일 경우, 환급 신청 기준일로부터 잔여일수만큼 전액을 환불한다.

제2항(의무식 제외대상) 4학년 2학기 재학생 중 3과목 이하의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의무식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졸업 필수요건인 봉사활동 1과목은 과목 수에서 제외)

제3항(식비 환급 비율) 식비 환급 비율에 대해서는 잔여식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단, 개강일로부터 3분의 2지점이 지났을 경우에는 식비 환급이 불가하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식 환급 신청을 요할 경우, 종합병원(3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확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급식평가 위원회를 거쳐 심의.(개인병원 '소견서'는 제출 불가/ 장염, 위염 등의 일시적인 질병은 심의 불가)

나. 식단의 질 재고를 위해 총학생회를 통한 급식평가 모니터링 단 운영
(단, 만족도 조사는 매월 '풀무원' 에서 실시)

3. 위와 같은 기준은 제2021-2차 급식평가위원회 개최일 11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